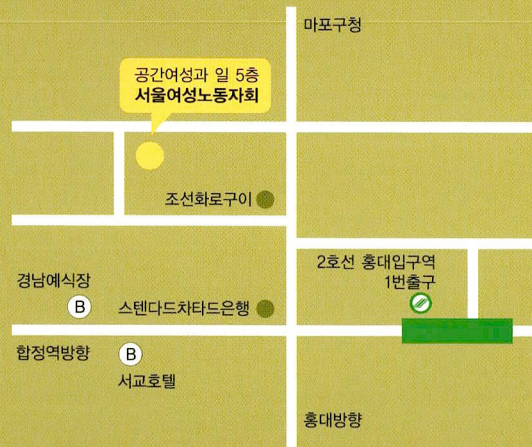


■ 찾아오시는 길



121-896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구 서교동 351-28) 5층  
대표 02-3141-3011 상담 02-3141-9090 팩스 02-3141-3022  
E-mail equaline@hanmail.net http://www.equaline.or.kr



서울여성노동자회  
SEOUL WOMEN WORKERS ASSOCIATION

여성노동상담

사)서울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대표 02) 3141-3011 상담 02) 3141-9090

일하는

여성  
WOMEN

출산휴가  
갑-을 성차별 미래  
가사 미래  
육아 미래  
임금체불  
출산휴가  
육아휴직  
성희롱가사  
비정규직  
보육  
성차별  
교육  
꿈  
시간제일자리  
결혼  
해고  
갑-을  
보육  
출산휴가  
육아휴직  
해고  
일

## 서울여성노동자회

1987년 “일하는 여성의 손과 지혜가 미치는 곳에  
무한한 생명력이, 일하는 여성의 힘찬 함성이 있는  
곳에 눈부신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기치아래  
일하는 여성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일하는 여성들이 일터와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여성노동자의 권리실현을 통해  
평등평화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부설기관

|                                       |              |
|---------------------------------------|--------------|
| 고용평등상담실                               | 02-3141-9090 |
|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br>www.kurowoman.com       | 02-867-4456  |
| 구로살터지역자활센터<br>www.gurolife.org        | 02-867-0516  |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br>www.workingmom.or.kr    | 02-332-7171  |
| 서울시남부여성발전센터<br>nambu.seoulwomen.or.kr | 02-802-0922  |
| 구립튼튼이어린이집                             | 02-809-9868  |
|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서울 서부                       | 02-3141-3019 |

### 후원 및 회원가입

서울여성노동자회의 회원이 되어 주세요.

(월 1만원 이상 C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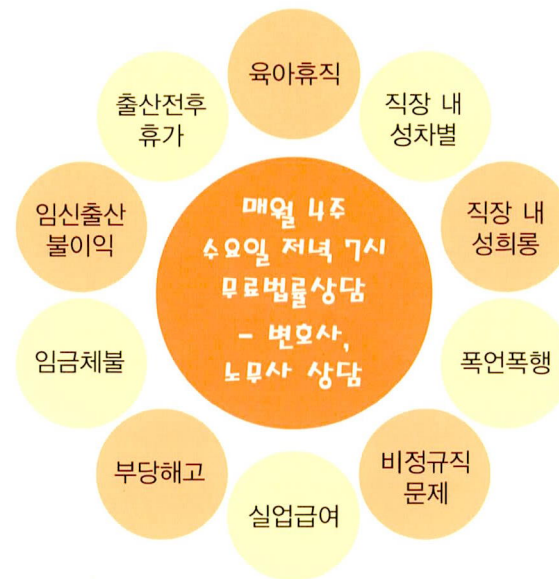
후원금 및 회비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됩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15-318425-13-203 사)서울여성노동자회

## 평등의 전화 고용평등상담실

고용평등상담실은  
고용노동부 지정 서울여성노동자회 부설기관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평등의 전화가  
함께 합니다. 전화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사와 여성노동전문 노무사,  
변호사의 자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장은 1년에 한 번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예방교육 실시로 성평등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 문화를 만드세요. ( 고용노동부 지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기관)

평등의 전화 고용평등상담실 02-3141-9090

온라인 상담 equaline.or.kr

## 여성노동상식

### 출산전후휴가

| 구 분 | 한명 출산       | 다둥이 출산        |
|-----|-------------|---------------|
| 기 간 | 90일(출산후45일) | 120일(출산후 60일)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상담실로 문의해주세요.

### 육아휴직

육아휴직 가능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 (2014 1.1.시행)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는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  
\*300인 이상 사업장 2014.9.25 시행  
\*300인 미만 사업장 2016 3.25 시행 예정

### 임금체불

사업주에 지급청구, 진정, 민사소송, 체당금 청구등.  
3년 이내 언제든지 청구 가능.

### 해고 등의 제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또는 징계를 하지 못하며,  
업무상 부상(질병) 치료를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해고하지 못함.

### 직장 내 성희롱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성립.